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상자! 투표함의 5S 1인 7표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투표소에 거동불편자용 기표대가 설치됩니다! 선거 슬로건으로 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유부초밥'은 왜 '김밥'이 되어야 했을까?



85/5Kg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기간(시간): 5.30.(금)~5.31.(토) (오전 6시~오후 6시)
- 투 표 장 소: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관내선거인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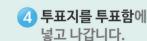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유권자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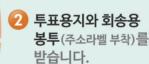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합니다.





- 사전투표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신고 없이 미리 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 절차도 참 편리하네요!

*

を対せつ選挙は対象的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무슨 뜻인지일아볼까요? ♥



사전투표는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먼 곳으로 출장을 떠났거나, 집이 아닌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관외선거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 되시죠?^^

이와 같이 투표소 입구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관외선거인은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은 후 봉험하고 회송용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사용된다는 사실 외에는 관내선거인의 경우 선거일날실시하는 일반 투표절차와 별반 다를게 없는데요. 관외선거인의 경우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투표방식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내선거인의 투표절차와는 달리 투표지가 개표를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관위로 우편 송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회송용봉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를 기능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전투표는 유권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선거인의 선거구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한 세계 최초이며, 가장 발전된 사전투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앞선 IT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놀라운 선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68.4%에서 제5회 지방선거 54.5%로 지속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적 제한을 극복한 사전투표제로 선거인의 투표 기회가 대폭 확대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5월 30일, 5월 31일, 6월 4일, 3일에 걸쳐 투표할 수 있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잊지말고 꼭 투표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상자!

투표함의 5S

- 투표소의 키다리 아저씨 -

제6회 지방선거는 1인 7표제로 투표용지가 많아져 투표함이 더 커졌습니다!



전자 칩(NFC) 부착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NFC)을통해투표함 바꿔 치기 가능성 원천 봉쇄 (스마트폰으로 정규 투표함 여부 확인가능)



투표개시 전 봉쇄·봉인

투표함 앞·뒤쪽을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하고 그 위에 봉인스티커를 붙인 뒤 투표 관리관이 서명



훼손

정상

봉인스티커는 부착 후 떼면 그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

Safe

투표마감 후 봉쇄·봉인

투표함 투입구에 잠금핀을 끼워 봉쇄하고 봉인스티커를 붙인 뒤 투표관리관이 서명



Strong

연성플라스틱 재질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고 우천 시에도 투표지가 젖지 않음





Scale



높이 74cm 가로 48cm 세로 52cm

많은 양의 투표지를 넣을 수 있고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 보관이 편리



소형 플라스틱 투표함도 함께 사용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유권자들,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투표용지, 기표소와 점 복(ㅏ)자의 기표용구..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표소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 표를 행사하고 나올 때까지 잠시 머무르는 장소일지도 모르겠습 니다. 유권자로서 여러분이 투표소에서 할 일은 점 찍어둔 누군가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일 외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유권자들의 공정한 한 표를 위해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투표소의 키다리 아저씨들을 소개합니다.

투표관리를 맡겨다오!

투표소를 찾은 여러분은 우선 신분증 을 꺼내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 표용지를 받습니다.

당신이 만난 첫 번째 키다리 아저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일 어나는 모든 사무는 바로 투표관리관 과 투표사무원이 책임지는데요. 여러

분이 유권자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며 기표용구를 꾹~! 무사히 찍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의 책임입니다.



구·시·군선관위는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베테랑 중 투표 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한편 읍· 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 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 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 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이들은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투표관리 사무는 물론, 투표소 경비, 투표의 진행, 투표 안내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잠시 들렀다 가는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선거의 종류, 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의 키다리 아저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 다는 사실 잘 모르고 계셨죠?^^

다 지켜보고 있다!

이상 없이 투표용지를 받아 각자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표를 하고 나면 끝나 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투표소에 도착하기 전부터 두 번째 키다리 아저씨인 투표참관인의 임무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투표소에 도착

하기 전인 오전 6시 이전 투표관리관 이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투 표참관인들이 꼼꼼히 지켜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참관인은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지켜봅니다. 투표참



관인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하는데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 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 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 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이 참여하는데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가 각 2명을 선정하 게 됩니다.

투표함을 지켜라

투표를 끝낸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 있지 않을까?', '투표만 공정하면 뭐 해? 개표를 조작하지는 않을까?' 암요, 철저하게 감시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키다리 아저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후 6시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 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합니다. 그리고 여 러분의 소중한 표가 들어있는 투표함 은 개표소로 옮겨집니다. 이 때 각 정당 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은 이동 중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투 표함 옆에 찰싹 붙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복경찰관도 함께



동반하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 참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의 봉쇄·봉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고 개함 이후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표부정 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챔! 또한 투표함의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 장된 전자 칩이 부착되어 있어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하여 정규의 투 표함인지 여부를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줄만 알았던 투표과정,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영화 속 특수작전을 연상하게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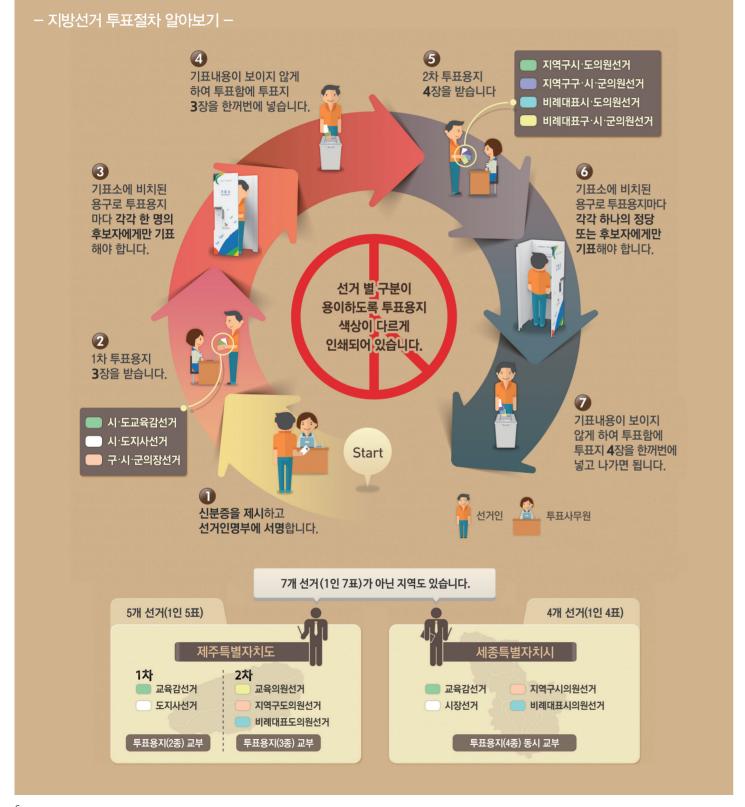
안심하고 후보만 고르세요!

묵묵히 여러분의 공정한 선거를 돕는 투표소의 키다리 아저씨들! 멋지지 않 으신가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표지를 넣는 투표함에 는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를 위해 무려 5가지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심하고 여러분을 대표할 후보자만 마음속에 점찍어두시면 됩니다. 그 뒤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공정한 한 표를 지켜줄 키다리 아저씨들 에게 맡겨 주세요~!

1인 7표제!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선거의 종류가 7개며, 투표소에 가면 무려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인7표제인 것입니다. 선거가 7개나 되니 투표를 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시하는 1인 7표제의 투표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 7표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합니다.

6월 4일 선거일에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각각 3장과 4장의 투표용지 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됩니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집니다. 1 차 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3장을 받 아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선거에 투표합니다. 2차 투표에서는 지 방의회의원에게 투표합니다. 1차 투표가 끝나고 투표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시· 도의원(지역구, 비례대표)과 구·시·군의원 (지역구, 비례대표)선거에 투표합니다. 예 를 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라면 1차 투표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에게 투 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 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과 종로구의회의 원에게 각각 투표하는 것입니다.

투표 순서 및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

| 교부방법 | 선거명 | 색상 |
|-------------------|----------------|-----|
| 1차 (3종) | 시·도교육감 선거 | 연두색 |
| | 시·도지사 선거 | 백 색 |
| | 구·시·군의장 선거 | 계란색 |
| 2차 (4종) |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 연두색 |
| |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 | 청회색 |
| |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 하늘색 |
| |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 | 연미색 |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7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인데요, 제주특별자치되도의 경우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인 4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합니다. 투표용지 색깔은 선거 별구분이 용이하도록 연두색(교육감, 지역구광역의원), 백색(광역단체장), 계란색(기초단체장), 청회색(지역구기초의원), 하늘색(비례대표 광역의원), 연미색(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6가지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1인 7표제.

투표 시 유의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투표시간은?

투표시간은 6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 니다

※ 사전투표: 5월 30일~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 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 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대기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하 A Ol. 102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7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 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

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 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 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인 7표제

투표 시 유의사항

9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나 정당을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역구기초의원선거 투표용지에도 반드시 한명의 후보자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11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사례인가요?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 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12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있거나 투표관리관 도 장이 안 찍혀 있어도 무효가 아닌가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은 경우에도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13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 관리관이나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 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14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 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이중투 표를 할 수 없습니다.

15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책 스토리 _ 거동불편자용 기표대 정책 스토리 _ 지방선거 슬로건

모든 투표소에

거동불편자용 기표대가 설치됩니다!

-작은 공간, 큰 참정권 -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설 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하여 홍보하며,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미비한 시설로 인해 침해받아서는 안 되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구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표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시실입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올해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동불편자용 기표대 를 한 단계 더 보완하였습니다.

일반용에 비해 기표대의 높이는 낮추고! 폭과 길이는 늘리며 편의성을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인데요. 높이 165cm / 폭 95cm / 길이 100cm의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는 반 평 남짓한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마어마하죠. 거동이 불편하지만 어렵게 투표소를 찾아 소 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공간, 그 자체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는 전동휠체어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폭을 깊게 함으로써 안정감 역시 높였는데요. 기존 기표대가 비밀투표를 행하기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

또한 기표대의 전면부와 측면부에 기표판을 이중으로 설치해 투표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스토퍼 판도 추가해 스쿠터의 바퀴를 고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모든 투표소에는 새롭게 도입된 거동불편자용 기표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러 어렵게 투표소를 찾은 분들에게 기표대로 인한 불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표소에 거동불편자용 기표대가 설치됩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출입이 가능한 보다 넓은 공간 전면과 측면에 기표판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유쾌한 투표를 위해 고민하고. 작은 공간에서 큰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슬로건으로 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유난히 자주 보이고 들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국 민', '청렴', '희망', '민생' 같은 말들이죠. 이런 단어들에 권태를 느끼실지 모 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들이 빛바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에게 '국민'을 낡은 단어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은 투표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도 자신의 손으로 뽑을 대표자에게 투표를 통 해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인지시켰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떤 단어들 을 가슴에 새기며 투표소로 향했을까요?

"사람마다 나라주인 투표로서 주권행사"

1963년.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이 아직 영유아기였던 시절,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입니다. '나라', '주인', '투표', '주권' 등 민주주의의 의 미를 날 것(?) 그대로 담은 단어들이 모여 있죠?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권리를 투표로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직접 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직은 낯설었던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은 아이들까지 투표소로 데려 가 새로운 민주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눈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후보 자격을 정당 소속으로 한정한 이 선거에서 국민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 주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원정수 중 63%에 달하는 110명(지역구 88 명. 전국구 22명)을 국회에 보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습니다.

"깨끗한 한 표 우리의 잘사는 길이다"

잘사는 나라를 염원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문구는 1971년 5월에 있 었던 제8대 국회의원선거의 슬로건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 득은 290달러 수준이었죠. 나라 전체에 가난이 도래하지 않은 곳이 없고 어떻게든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 국민 모두가 치열하게 살던 시절이었습

70년대의 첫 국회의원선거였던 이 선거는 영·호남 지역갈등, 제3당의 미 미한 지지율(단 한명의 당선자도 없었음)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기도 했지만 국민들은 한 마음으로 '잘사는 나라'라는 부푼 꿈을 간직한 채 투 표소를 찾았습니다.

"공명선거로 신바람나는 지방자치시대를..."

1995년은 모든 시민들에게 기념할만한 해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27일에 실시된 것이죠. 위 문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막 열기 시작한 우리 나라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제6공회국은 개헌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제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폐지됐던 지방의회를 부활시키고 지방의회의원, 지방 자치단체의 장(長) 모두를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를 각 4년으로 규정했는 데요, 이 선거로 조순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15명의 광역단체장과 230명의 기초단체장, 875명의 광역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 개헌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 져왔다는 점에서 우리 현대사의 의미 있는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리 잡은 지도 50여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유권자의 엄중함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주권'이나 '공 명선거'는 우리사회의 당연한 전제일 뿐, 더 이상 국민에게 교육해야 할 가 치가 아닌 것이죠.

민주주의를 행하기 위해서 시작한 투표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까지! 우리 국민과 사회가 치른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해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슬로건도 우리 사회의 높은 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2014년 오늘! 단지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한 표가 아닌, '한 표가 나와 내 가 족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의식을 갖고 우리는 투표소로 향합니다.

선거부정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제2편

- 투표지분류기를 둘러싼 진실과 허구 -

Q. 투표지분류기는 불법 장비다?

A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 장비가 아니다. 지난해 1월 4일 '18대 대통령선거 때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개표 를 했다'며 대통령선거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데 이전 대선 때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대선 전에는 불법장 비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기각되거나 패소했다.



개표부정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전자개표기라 부르는 투표지분류 기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처음 사용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 지 부정선거 단골 메뉴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투표지분류기 로 대선 개표가 처음으로 치러진 때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맞붙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이다. 음모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 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따라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를 거 친 바 없으므로 전자개표기의 사용은 위 법조에 위배된다.
- 2.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궐선거 에 한정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 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나 그런 규칙이 제정

얼핏보면 그럴 듯하게 들리는 주장이나, 이는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 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투표지분류기는 (구)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과 그 위임에 의한 (구)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투표 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에 해당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제2항에 이를 직접 명시하여 투표지분류 기의 합법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반면 음모론자들이 근거로 드는 같은 법 제278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 면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의 전산 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종이

없이 컴퓨터로 투표와 개표가 모두 이루어지는 "전자선거"를 추진하기 위한 규정으로 투표지를 분류하기 위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와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경우, 부칙은 본칙에 대해 부수적으로 필요 한 내용으로 해당 법령의 시행시기나 경과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을 담고 있는 임시규정이다. 따라서 법령이 바뀌어 부칙이 새로 개정되 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부칙은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문제의 부칙 제5 조 제1항은 1994, 3, 16, 제정된 것으로 그 후 공직선거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2년 시점에서 는 이미 효력이 없다.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문은 보궐 선거에서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음모론자들은 투표지분류기가 불법장비라는 이유로 헌법소원과 선거 무효소송을 35건이나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들의 주장을 지금까지 단 한건도 안정하지 않았다.

Q.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다?

A. 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반듯하게 펴는 작업을 하는 개함부에서 일일이 후보자 별로 투표지를 분류했다. 투표지분류기가 도입되면서 개함부에서 개봉된 투표지는 곧장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겨진다.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가지 런히 정리하여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한다. 그렇게 투입된 투표지는 후 보자별로 분류된다.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PC와 투표지분류기 본체 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지가 분류기에 내장된 스캐너를 지나면서 기 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포켓으로 분류된다. 스캐닝 된 이미지는 컴 퓨터 화면에 나타나고 자동으로 집계된다. 그렇다고 모든 표가 분류되 는 것은 아니다. 미분류 포켓이 따로 있다. 동시에 두 후보 이상에게 투 표하거나.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인주가 엷거나 번짐이 심한 경우, 기울어져 투

입된 경우 등이 미분류 포 켓에 담긴다. 도입 초기 2002년 ~2003년에는 이 런 미분류 표를 제 외하고 자동 집계 된 데이터를 투표지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일명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조작 의혹입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투표지분류기를 둘러싼 진실과 허구를 살펴보았습니다.



퓨터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곧바로 전송하려 했다. 투표지분류기를 도 입한 취지인 신속성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미분류된 표는 다음 단계에 서 집계해 나중에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투표지분류기를 처음 도입했 던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16대 대선 이 틀 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었다. 미분류 표까지 모두 합산한 뒤 중앙선관위에 전송하지는 한나라당 요구를 받아들여. 전송 은 다른 컴퓨터로 입력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 를 분류해 집계만 하고, 보고는 따로 하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 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초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는 부적절 하다. 16대 대선 때 한나라당 요구를 받이들이면서 전자개표기는 '투표

당시에도 투표지만 분류하고 집계는 따로 하게 했지만, 투표지분류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컴퓨터 조작 이라며 대선 무효 확인소송을 했다. 대통령선거 사상 처음으로 80개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한나라당이 지목한 80개 개표소 투표지 1104만9311장에 대해 수검표를 했다. 그 결과 모두 확인해보니 이회창 후보 표가 134표 정도 늘어났다. 기계의 착오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 등으로 10만표 중 1표의 비율로 오차가 생긴 것이었다. 이때 투표 지분류기의 정확성이 공개적으로 인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 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구)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 ·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시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 프로그램의 작성 · 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 ·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부칙 (1994. 3. 16.)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 ·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구)공직선거관리규칙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 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기획연재 _ 선거부정 의혹 해부

선거부정 의혹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제3편

-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 처리에 대한 오해 -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지분류기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투표지분류기가 불법 장치라며 선거 때마다 법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매번 법원에서 기각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18대 대선 때는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미분류표의 비율이 5% 이상이면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엉뚱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음모에 불괴합니다.



네트외크를 통하 해킨은 분기능하니다

Q. 미분류율이 5% 이상이니 모두 무효이다?

A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난 대선 때 미분류율 규정을 새롭 게 들고 나왔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규정에 의하면 미 분류율이 5% 이상 나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선 관위는 미분류표가 쏟아져 나와도 그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것 이다. 그래서 '미분류율이 5% 이상 나온 지역의 투표수를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분류율이 5% 이상인 지역이 31개 지역인데 이 지역 투표수 169만 4521표를 무효로 하 자고 한다. 1, 2위 표치를 넘어서기에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미분류율 5%' 근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부정선거 음모 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를 근거로 한다. 그 근거 란 바로 2002년 투표지분류기 제안 요청서에 '미인식 투표지 5%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조달청이 장비성능 평가와 장비납품 검 사 때 입찰 업체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분류율이 5%를 초과할 경우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 하는 이들은, 10년 전 조달청의 장비성능 평가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치 선관위의 규정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Q. 미분류율이 5% 이상인 31개 지역 169만4521표는 무효이다?

A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다. 미분류표란 말 그대로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해 내지 못한 표다. 인주가 희미하게 찍혔거나, 맞은편에 묻었거나, 두 후보 경계에 기표된 것이 미분류표로 분류된다. 미분류표는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했지만 심사·집계부로 넘겨져 육안심사를 거쳐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재분류한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즉, 투표지분류기가 분류를 못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수작업을 거쳐 합산된다. 미분류표는 무효표가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재분류되어야 하는 표이다. 따라서 미분류율이 등에 이상인 지역의 투표수를 모두 무효로 하자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이다.

Q.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된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과 해킹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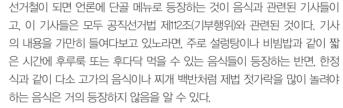
A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이 렇다. '전자개표기가 외부와 랜선, 무선랜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킹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조작하면 개표결과 조작도 가능하다.' 여기에 또 다른 버전도 보태진다. '선관위 서버를 국정원이 관리하는 의혹도 있어, 중 앙선관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의 보안대책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전자개표기, 개표 사무로 사용하는 중앙선관위 전산망 서버도 사용할 수 없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투표지분류기는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수개표 작업을 돕는 장치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개표소마다 투표지분류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외부 통신망과 단절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은 불가능하다. 또 지난 18대 대선 때는 여야 정당, 학계, 정보통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자문위원회를 열어, 투표지분류기 운영과정이나 보안체계, 프로그램소스코드를 공개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개표 과정은 개함→투표지분류기 운영→심사 · 집계부 수작업 개표→위원 검열→위원장 공표→확정→보고석→중앙선관위 서버 전달→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지로 이뤄진다. 투표지분류기→중앙선관위 서버로 바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여야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들의 감시 아래 심사 · 집계부에서 미분류 투표지까지 모두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심사 · 집계부를 거치면서 개표상황표에 무효표를 포함한 모든 득표 수가 기록된다. 개표상황표 사본은 보고석 · 기자 · 참관인에게 배포되고, 정본은 위원석에 전달된다. 위원장 공표를 거쳐확정된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가 아닌, 중앙선관위 서버에 연결된다른 컴퓨터에서 손으로 쳐서 전송하고, 팩스로도 전송한다. 팩스로 전송된 결과와 컴퓨터에 집계된 결과를 다시 한 번 대조하기 위해서다. 개표참관인들이 수작업 개표결과를 참관하고 참관인들과 기자들이 현장 개표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나중앙선관위 서버 전송결과가 실제 개표 결과와 다르게 나오면 금방 드러나게 된다.

설렁탕과 **김밥**

- '유부초밥'은 왜 '김밥'이 되어야 했을까? -



흥미로운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시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시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 떡, 김밥, 음료(주류를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나 차, 과자, 떡, 김밥, 음료는 문제가 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2010, 5, 3, 고양시의원에 출마를 준비 중이던 0 0 당 * * * 후보가 사무실 개소식에서 유부초밥을 준비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유부초밥은 명시돼 있지 않으니 김밥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제지를 받고 부라부랴 김을 준비해 유부초밥 재료로 김밥을 만들어 대접했다는 기사가 있었고, 이 기사를 보고 공직선거법적용이 너무 경직된 것이라고 느끼거나'어... 왜 그렇지?'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던분도 계셨을 것이다.

'유부초밥'은 왜 '김밥'이 되어야 했을까?

그러면 도대체 왜 공직선거법은 이런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일까? 그실마리는 유부초밥 기사에 나온 선관위 관계자의 "선거법상 식사류와 다과류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데, 유부초밥이든 김밥이든 상관없이 1인당 가격이 3,000원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다과류는 (커피나 과자 또는 음료수로 배를 채울 사람은 없을 것이니) 간식이라는 느낌이 불과하지만, 식사류는 한 끼 배불리 먹었다는 포만감을 줄 수있고, 그 포만감은 곧바로 식사류를 제공한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인 빚으로 다가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좀 어렵게 표현하자면, '기부행위는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하여 선거 결과가 좌우되게 하는 것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선거의 주된 원인이 되는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9. 4, 30, 2007헌바29.86)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본질적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포만감도 주고 가격이 오, 육천원대인 설렁탕이나 비빔밥과 비교해볼 때, 김밥은 포만감도 주지 않을 뿐더러 가격이 이, 삼천원대라는 점에서 김'밥,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다과류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포만감이나 가격대에서 김밥과 호각지세일 수도 있는 유부초밥은 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았을까? 그건 아마도 김밥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1997. 11. 14, 일부 개정 당시 유부초밥은 지금만큼 김밥처럼 일반화되지 않아서였기때문이되라.

'대접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튼 선거가 돈은 묶고(금권선거 금지) 언론은 여는(자유로운 여론) 방향으로 가야 하는 만큼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직에 진출하려는 자는 유권자에게 뭔가를 대접함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해지려는 생각을 애초부터 버려야 하고, 유권자로서는 콩고물이라도 거부해야 할 것이다.

통치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은 매몰차다 싶을 정도로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기부행위가 있을 경우 후보자로서는 형벌은 물론 당선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권자로서는 제공받은 음식의 수 십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기도 함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2



발트3국 소련연방 **독립투표**

수 만명의 인간띠로 보여 준 독립의지,소련연방 붕괴의 시작 –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시청하면서 러시아 선수단이 입장할 때 가볍게 놀란 일이 있다. 그건 러시아의 인구 수가 1억 5천만으로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러시아가 왜 인구가 저것 밖에 안되나 싶었던 것이다. 일본과도 대차가 없지 않은가. 그러나 곧 그 이유를 깨달았다.나는 순간 러시아를 왕년의 '소련'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어로는 USSR로 표기하고 러시아어로는 CCCP로 표기되던 소비에 트 연방. 왕년 '소련'의 인구는 3억에 육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러시아의 인구가 겨우(?) 1억 5천만이라고 소개됐으니 잠깐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다.

1991년 3월 17일 폭주하는 민주화 열망과 각 공화국들의 저항 속에 기진맥진한 소련 당국은 소비에트 연방 유지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나 소련을 구성하던 15개 공화국 중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과 몰도바 등 여섯 공화국은 참여를 거부했다. 소련 최고 회의는 "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여섯 공화국에 경고를 보내는한편, 과거 소련 공산당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아닌 "동등한 주권 공화국들의 새로운 연방"이라는 그럴듯한 구호로 각 공화국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쓴다. 어쨌든 단일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안간힘이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가 70년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는 사실은 소련이라는 정치

적 체제가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반증한다.

이 역사적 투표의 결과는 뭐라고 딱 한 마디로 묘사하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는 연방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연방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어깨에 힘이 실리 나 했지만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등의 대도시에서는 반반이거나 오히려 반 대표가 많았고 우크라니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은 가운데 키 에프 같은 대도시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던 것이다. 이 불안한 국민투표를 통 해 재출발한 소비에트 연방은 5개월 뒤 소련의 극단적 보수패(군부와 KGB) 가 일으킨 엉성한 쿠데타를 겪으면서 결정타를 맞고 그 해 12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니와 1991년 3월 17일은 소련 역사상 최초의 전국적 국민 투표일이 면서 그 몰락으로 치닫는 도상의 스타트 시점으로 기억해 둘 만하다.

그런데 이 기울어가는 소련 당국이 국민투표가 끝나자마자 했던 행동 중 하나는 발트 3국 중의 하나이자 소련을 구성하던 공화국 리투아니아의 국방 장관을 체포했다가 수 시간만에 풀어준 것이었다. 소련 당국은 어떻게든 발트 3국을 연방 안에 묶어 두기를 원했고 세 나라 국민들의 국민투표 보이콧을 못마땅해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발트 3국 국민들은 완강했다. 그들은 유라시아를 뭉뚱그린 거대한 연방 내 공화국의 국민이 아니라 작지만 주권을 가진 국가의 국민임을 재천명했다. 그들은 주장했다. "우리는 2주일 전에 국민투표를 했다." 3월 3일 실시된 (리투아니아는 조금 더 빨랐다) 연방 탈퇴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발트 3국 국민들은 80퍼센트가 넘는 찬성표로 자신들의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도이미 이들의 독립 열망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 동유럽국가 수준"의 독립 허용을 시사한 것이다. (1991. 3. 22. 슈피겔과의 회견 중) 발트 3국은 소련이라는 거대한 방죽이 무너지는 계기를 만든 작은 방죽이었다. '발트3국'이라고 묶어 말하지만 사실 세 나라는 인종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다. 에스토니아는 오히려 핀란드 쪽과 더 가깝고 리투아니아

는 폴란드의 영향으로 가톨릭이 우세하다. 리투아니아는 독립의 지위를 누린적이 있으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1918년 러시아 혁명 후에야 독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기구한 운명의 나라들이기도 했다. 이들이 다시 소련의먹었감이 된 것은 1939년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조약, 이른바 '독소밀약' 때문이었다. 서유럽 정복의 아욕을 불태우던 히틀러는 동쪽의 붉은 곰 러시아를회유해야 했고 그 댓가로 소련의 몫으로 '양해'한 것이 발트3국과 폴란드 동부 등의 땅이었다.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발트3국은 갑자기 들이닥친 소련군의 낫과 망치의 깃발 이래 50년을 살아야 했다. 발트 3국에서 독립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 이후였다. 1987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리가에서 "스탈린에 의해 죽어간 이들의 추모식"이 열리고 소련 당국에 대한 저항이 표출된 후의 발트3국의 역사는 소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3국과 그를 막으려는 소련의 줄다리기의 연속이었다.

그 절정은 1989년 이른바 리벤트로프 몰로토프 조약, 독소불가침협정 50주년에 있었다. 발트 연맹을 결성한 발트 3국의 정치인들은 하나의 황망하기까지 한 행사를 기획한다. 이 독소밀약을 통해 소련이 발트3국을 불법 통치해왔음과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하라는 시위였다. 시위 방식은 다름아닌 '인간띠'였다.

소련 관영 타스 통신이 "불법 행위 엄단"을 연일 방송하고 그때까지는 살아 있던 루마니아의 독재자 (넉 달 뒤에 민중봉기로 총살당하지만) 차우셰스쿠가 루마니아 군을 동원하여 소련을 돕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으스스한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그 봉화가 올랐다. 탈린 시민들은 수십 년간 내보이지 못했던 국기를 들고 역시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노래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부르기만 하면 시베리아 행이 확실했던 불온한 에스토니아 국가를 부르며 거리로 뛰어나왔다. 손에 손을 잡은 인간띠는 국경을 넘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로 이어졌다. 도시의 경계만 벗어나면 황량

한 평원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 길목에 발트 3국 국민 200만 명이 모여들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달랐지만 비슷한 역사를 함께 한 그들의 마음과 목소리는 오직 이 한 단어만을 백차게 부르짖고 있었다. '라이스베스(kisves-리투아니아)', '브리비바(brivba-라트비아)', '비바두스(vabadus-에스토니아)'라고 외쳤다. 그것은 모두 '자유'라는 뜻이었다. 그들의 손이 이어진 길은 무려 600킬로미터, 발트 3국민들은 그 외침으로 공산주의 전제 통치의 종식의 신호탄을 쏘았다.

이 인간띠 시위 이후 소련은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등 연속된 민족 분규에 시달렸고 공산주의의 철권 통치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1991년 3월 17일 소비에트 연방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는 목적으로 소비에트 연방 최초의 국민투표가 전 소련에서 실시됐을 때 그에 바로 앞서 3월 3일 "독립 찬반 투표"를 결행해 버림으로써 결정적으로 김을 빼 버린 것도 발트 3국이었다. 1991년 3월에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실시된 두 국민투표는 그렇게 수십년 세월을 돌고 돌아 온 역사의 정직한 복수였다. 총칼과 군홧발로 세 나라의 독립을 빼앗고 그 국민들을 짓눌러 온 소비에트 연방은 바로 그 세 나라의 국민들의 완강한 용기와 정직한 한 표 행사를 통해 몰락의 길을 재촉했던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이 발트 3국의 국민들 또한 공포에 젖고 있다는 소식이다.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개입하는 것은 그들에게 곧 악몽의 재연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트3국 국민들이 25년 전 600킬로미터를 이었던 자유의 외침과 소련군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도 "연방 찬반 투표"에 앞서 "연방 탈퇴 찬반 투표"를 감행했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지난 역사와 같은 형극은 발트 3국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못할 것이다.

14 15



아래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자료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ec.go.kr/